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70호

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95호(2014.8.21.)로 지정·고시 된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7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의 명칭 :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(고시번호)
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 정비구역	서대문구 창천동 18-36, 30-8호 일대	4,597.9	2014.8.21.(서울특별시고시2014-295)

3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구분	구역명	정비사업 시행 기간	면 적(㎡)	비고
기정	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환경정비구역	2014.8.21~2019.8.20.	4,597.9	근거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제6항
변경		2014.8.21~2021.8.20.(2년간)		

4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신촌지역 중심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촌지역(서대문)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연장

5. 그 밖의 정비계획 : 변경없음

6.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02-2133-4646)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(☎02-330-16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